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내규

제정 2018. 5. 2 내규 제35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단 또는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쟁소 사건중 이사장이 요구하는 수임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사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이사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노무사(법무법인 및 노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을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시 공개모집방법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 후 선발한다. 공개모집 응시자 부족 및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유관단체 전문변호사 및 전문노무사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없이 순수 자문활동만을 하는 법률고문이나 특정사건에 대한 일회성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며, 양주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③ 소송 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시 2년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며 연임 시 소송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공단 또는 이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공단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이사장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중 3인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내부인사 1인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심사) 위원회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공개모집 시 구성되며 고문변호사 등 선정대상자의 전문성, 청렴성을 평가하기 위한 소송수행계획서, 주요 이력, 징계 전력 사항 등 점수평가제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5조(직무)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수행한다.

1. 공단 또는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적인 사항
2. 공단 또는 이사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을 위임하여 처리[별지 제4호 서식]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 등은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공단 또는 이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6조(자문수당) ①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자문 수당 추가 지급 기준	
건수	금액
6건 ~ 7건	100,000원
8건 ~ 9건	200,000원
10건 이상	300,000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 지급

② 수당은 매월 지급하며, 지급일은 공단과 고문변호사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소송 등의 대리) ① 공단 또는 이사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변호사 등을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등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소송비용 등) ① 소송수행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④ 고문변호사 등이 각종 심사청구, 행정심판, 형사사건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고문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공단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장이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공단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제9조(직원 소송비용 지원) ① 공단 소속 임직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 피소 또는 공소제기 된 경우 이사장은 해당 직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형사 피소 또는 공소제기 당시 공단 소속 임직원인 경우
2.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검사의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각하로 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총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1.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임직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제10조(자문실적부 비치) 이사장이 제1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노무사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자문
노무사는 이 내규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8조 관련)

1. 착수금

구 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사 건 별	착 수 금	
민 사 소 송	가. 신청사건	○ 변론 또는 심리가 있는 경우 : 30만원 ○ 변론 또는 심리가 없는 경우 : 20만원	○ 청구서
	나. 본안사건	(1)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200만원 이내	○ 청구서
		(2)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 소가증명원 또는 청구확정서 사본
	다.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행 정 소 송	가. 신청사건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나. 본안사건	(1)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민사소송에 준한다	
		(2)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환송심	○ 민사소송에 준한다	

※ 소송물가액은 고문변호사 등이 공단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변동 시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 시 구비서류
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 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청구의 포기·인낙(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등의 경우도 포함한다)·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용에 의한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변론 없이 각하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청구서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증명서 ○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3. 그 밖의 비용

지 급 자 료	구 비 서 류
가. 인 지 대: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 달 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 증 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 정 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실제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	○ 청구서 ○ 인지·송달료의 납부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별표 2]

수임변호사·노무사의 착수금 지급 조건표(제8조 관련)

소송물가액	지 급 액	소송물가액	지 급 액
5,000만원미만	2,000,000원	7,800만원미만	2,330,000원
5,000만원이상	2,050,000원	7,900만원이상	2,340,000원
5,100만원이상	2,060,000원	8,000만원이상	2,350,000원
5,200만원미만	2,070,000원	8,100만원미만	2,360,000원
5,300만원이상	2,080,000원	8,200만원이상	2,370,000원
5,400만원이상	2,090,000원	8,300만원이상	2,380,000원
5,500만원미만	2,100,000원	8,400만원이상	2,390,000원
5,600만원이상	2,110,000원	8,500만원미만	2,400,000원
5,700만원이상	2,120,000원	8,600만원이상	2,410,000원
5,800만원미만	2,130,000원	8,700만원이상	2,420,000원
5,900만원이상	2,140,000원	8,800만원미만	2,430,000원
6,000만원이상	2,150,000원	8,900만원이상	2,440,000원
6,100만원미만	2,160,000원	9,000만원이상	2,450,000원
6,200만원이상	2,170,000원	9,100만원미만	2,460,000원
6,300만원이상	2,180,000원	9,200만원이상	2,470,000원
6,400만원이상	2,190,000원	9,300만원이상	2,480,000원
6,500만원미만	2,200,000원	9,400만원이상	2,490,000원
6,600만원이상	2,210,000원	9,500만원미만	2,500,000원
6,700만원이상	2,220,000원	9,600만원이상	2,510,000원
6,800만원미만	2,230,000원	9,700만원이상	2,520,000원
6,900만원이상	2,240,000원	9,800만원미만	2,530,000원
7,000만원이상	2,250,000원	9,900만원이상	2,540,000원
7,100만원미만	2,260,000원	1억원이상	2,550,000원
7,200만원이상	2,270,000원	1억5천만원이상	2,800,000원
7,300만원이상	2,280,000원	2억원이상	3,050,000원
7,400만원이상	2,290,000원	2억5천만원이상	3,300,000원
7,500만원미만	2,300,000원	3억원이상	3,550,000원
7,600만원이상	2,310,000원	4억원이상	4,050,000원
7,700만원이상	2,320,000원	5억원이상	4,55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고문변호사·노무사 위촉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내규」에 따라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고문변호사·노무사 위촉제외와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노무사 ○ ○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측 장

변호사·노무사 ○○○

귀하를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내규」 제2조에 따라 우리 공단의 고문변호사·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계 약 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노무사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노무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는 청렴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등”의 징계내역 등을 열람 및 조회하여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고문으로 업무수행이 부적절할 경우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등”은 내규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이사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단 또는 이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이사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수임현황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이사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내규 제8조에서 정한 금액을 “고문변호사 등”에게 지급한다.

② 사건 계류 중에 소송목적의 값이 변동이 있으면 “이사장”과 “고문변호사 등”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 등”에게 내규 제6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하며, 지급일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고문변호사 등”이 “이사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내규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 등”은 수임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진행상황을 “이사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한 경우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경우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경우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경우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수령한 경우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고문변호사 등”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법률자문실적) “고문변호사 등”은 공단의 모든 법률자문을 실적부(내규 별지 제5호서식)로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사장”과 “고문변호사 등”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사장”과 “고문변호사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사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고문변호사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양쪽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내규」 1부

년 월 일

[이사장]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 ○ (서명 또는 인)

[고문변호사 등]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노무사 ○ ○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생 년 월 일:

[별지 제4호 서식]

청 령 서 약 서

나는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고문변호사·노무사로서 맑고 깨끗한 법무행정
조성에 앞장서고 청렴생활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지 않으며, 부당한 접대나 청탁을 하
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1. 나는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 나는 미공개 정보이용 및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1. 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불법행위를 과감히 척결하여 고문변호사·노무
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에서 다짐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노무사에서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변호사·노무사 ○ ○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자 문 실 적 부

(번호사·노무사 ○○○)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 문 사건명	자문결과	
	연월일	소 관 부서명	담당자	전화 번호	자문 형식		연월일	회신 내용

※ 자문형식은 문서, 면담, 전화로 구분한다.